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두3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6. 5. 29. 선고 2026누1000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6. 11. 8. 품목 용역비, 공급가액 38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7. 5. 30. 품목 용역비, 공급가액 1,78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각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 각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위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 기재(용역비)와 달리 이 사건 거래를 투자금의 반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4. 2.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

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이 용역비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거래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

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용역의 공급이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품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근거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이는 위 법인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소외 회사가 2012. 7. 26. 원고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거나 원고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2014.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6. 9. 30.경에 이르러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한 후 2017. 12. 31. 대표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직권폐업처리가 되었는데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본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마친 이상,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나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인식과 무관한 사후적

사정일 따름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원고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김성수